

Issue Monitor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미국 디지털자산 3법을 중심으로

July 2025 | 제173호

삼성KPMG 경제연구원

—
home.kpmg/kr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미국 디지털자산 3법을 중심으로

Issue Monitor | July 2025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상무

gyulimkim@kr.kpmg.com

노승환

책임연구원

seunghwanroh@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Page

美 트럼프 대통령, '25년 7월 18일 지니어스법 서명과 의의

3

스테이블코인이란?

4

민간이 발행하고,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부상

4

스테이블코인의 유형과 페깅 메커니즘

5

급성장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6

미국 하원 통과 디지털자산 3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

지니어스법(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

7

클래리티 법안(디지털자산 명확화 법안)

10

反CBDC 법안(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12

미국 디지털자산 3법의 시사점과 향후 전망

13

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는가?

14

단순 금융기술이 아닌 달러 패권 유지 등 경제·금융·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

14

글로벌 달러 패권의 강화 계기...신흥국 중심으로 통화 대체 가능

15

제도화 가운데 미국 금융기관, 빅테크, 핀테크 모두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장

16

숙원사업 해결로 거침없는 암호화폐 업계와 테크기업

16

제도화에 맞춰 사업 본격화 나서는 전통 금융기관과 유통사, 핀테크

17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동향과 플레이어 행보

18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동향

18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국내 빅테크·금융사·스타트업 간 합종연횡

21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통화주권-금융안정성-디지털자산 시장 혁신 간 구조적 딜레마

23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언

24

美 트럼프 대통령, '25년 7월 18일 지니어스법 서명과 의의

“

디지털자산 3법

美 하원 통과,

디지털자산 규제의 전환점

”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7월 18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법 '지니어스법(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에 최종 서명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에 놓이게 되었다. 더불어 '25년 7월 14일~18일 미국 하원의 특별 입법기간(크립토 워크) 중 클래리티 법안(디지털자산 명확화 법안) 및 반CBDC 법안(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또한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미국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규제 체계 정립을 필두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디지털자산의 규율 체계 전반을 정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신뢰 기반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또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과 금융시장 내 미국의 주도권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자산 3법은 국내 검토 예정인 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요한 제도적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자산 3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국내외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도입이 적극 검토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논의와 이슈 등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하원 통과 디지털자산 3대 법안 현황 및 주요 내용]

법안명-의안번호	진행 현황	주요 내용
지니어스법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 - S.1582	2025년 2월 4일 상원 발의 2025년 6월 17일 상원 통과 (찬성 68표, 반대 30표) 2025년 7월 17일 하원 통과 (찬성 308표, 반대 122표)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대한 연방 차원 포괄적인 규제 체계 정립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라이선스 및 100% 지급준비금 보유·월별 공시 및 회계법인 검사 의무화, 준비자산 요건 명시 - 즉시상환 및 우선변제권, 마케팅 금지 - 외국 발행인의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공개·유통 자격 심사
클래리티 법안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CLARITY Act, 디지털자산 명확화 법안) - H.R.3633	2025년 5월 29일 하원 발의 2025년 6월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통과 (찬성 32표, 반대 19표) 2025년 7월 17일 하원 통과 (찬성 294표, 반대 134표) - 상원 심의 및 대통령 서명 절차 예정	- 디지털자산 구분(증권·상품·스테이블코인) 및 규제 관할의 명확화 -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 기준 신설 및 조건 충족 시 상품성 인정
반CBDC 법안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 H.R.1919	2025년 3월 6일 하원 발의 2025년 4월 2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심의 및 보고서 채택 2025년 7월 17일 하원 통과 (찬성 219표, 반대 210표) - 상원 심의 및 대통령 서명 절차 대기	- 연방준비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직간접 발행·유통 금지 - 연준 이사회(FRB)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CBDC 연구·개발·테스트 등 금지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스테이블코인이란?

“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
안정적 가치·블록체인
네트워크상 발행되는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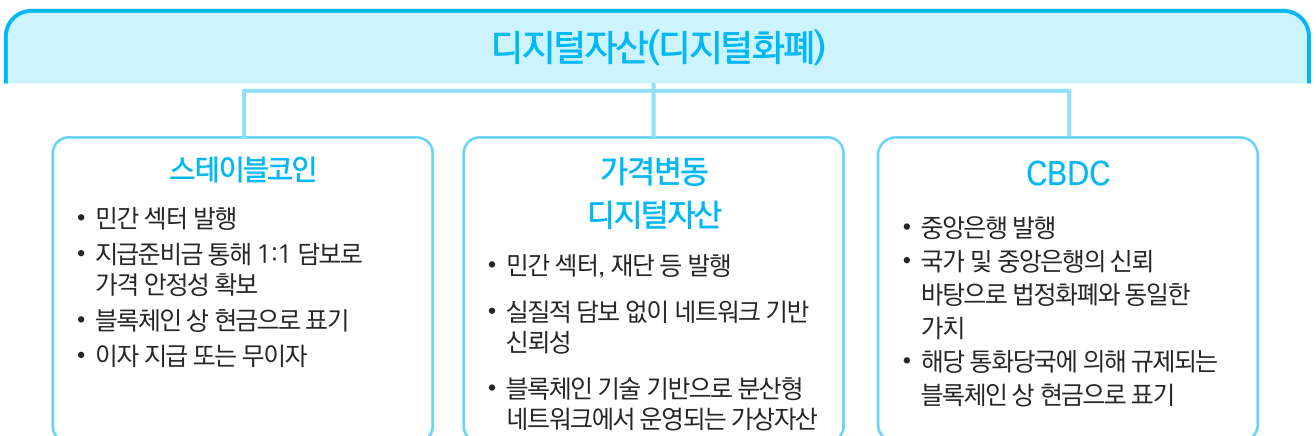
민간이 발행하고,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부상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가치를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2014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의 USDT가 등장한 이후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며 발행·유통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특징은 ① 민간이 발행인으로 ② 특정 자산과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페깅(Pegging) 메커니즘을 가지며, ③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발행되는 코인이라는 점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전 세계 통용될 수 있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변동성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것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나 유로와 같은 법정화폐부터 원자재·금과 같은 실물자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산과 연계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으로서 가치저장 수단이나 투자수단을 비롯해 결제·송금 등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발행 주체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사의 파산 리스크, 충분하지 않은 담보, 페그 이탈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지만, CBDC는 법정화폐로서 국가 발권력에 기초하여 법적 효력과 공적 신뢰를 가지며 통화정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익명성·탈중앙화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의 디지털 기록화, 중앙집중적 관리 구조에 따른 데이터 집중과 보안 위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감시와 통제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Source: US 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 "Digital Money" (April 2025),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특정 자산과 페깅해
안정적 가치 유지
지급준비금이 신뢰성 담보

”

스테이블코인의 유형과 페깅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법정화폐 담보형(Fiat-collateralized), 가상자산 담보형(Cryptocurrency-collateralized), 실물자산 담보형(Real asset-collateralized) 및 알고리즘형(Algorithmic)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법정화폐 담보형은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치를 유지하되, 발행량에 준하는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법정화폐·예금·국채 및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 MMF)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며,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 페이팔의 PYUSD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법정화폐 담보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코인에서 달러로 즉각적인 상황이 제한되기도 하며, 담보 불충분 상태에서 대량 환매가 몰라면서 지급준비금 부족과 환매 지연 등 페그(Peg) 이탈 위험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발행량만큼의 지급준비금 보유와 고유동성 자산 보유, 이용자 환매 요구에 따른 상환 의무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추세이다. 가상자산 담보형은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담보로 예치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담보자산 자체가 가진 높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 담보화(Over-collateralization)를 사용하며, Maker가 운영하는 DAI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물자산 담보형은 금, 은, 부동산, 원유 등 실물자산을 토큰화하여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며 토큰 단위 소액화로 접근성이 높으나, 유동성이 낮고 보관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알고리즘형은 담보나 지급준비금 없이 알고리즘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시장 수급에 따라 코인 공급량을 자동 조절하는 방식이다. 2022년 테라(Terra)는 수요일에 따라 루나(Luna)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치를 유지했으나, 참여자 간 테라 생태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하루 만에 99% 폭락한 바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는 원천적으로 신뢰와 알고리즘 견고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특징을 지닌다.

[스테이블코인 분류 및 특징]

	정의	장점	단점	대표사례
법정화폐 담보형	• 법정화폐(USD, EUR 등) 또는 국채를 1:1로 예치하여 발행	• 안정성이 높고 신뢰 가능 •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시스템, 기업 정산 등 광범위한 사용처	• 발행사의 담보 자산 관리로 운영 투명성이 중요	USD USDC PayPal USD Tether EUR Euro Tether STASIS EURO 기타 XSGD BiLira Rupiah Token
가상자산 담보형	•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초과 담보로 설정하여 발행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발행 및 관리로 탈중앙화 운영	• 시장 변동성에 따른 초과 담보 필요 및 담보 청산 발생 가능	Dai Liquity USD crvUSD
실물자산 담보형	• 금,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발행	• 법정화폐 대비 인플레이션 영향이 적을 수 있음	• 온체인 즉시 거래 어려움으로 유동성 문제 및 보관 비용 발생	PAX Gold Tether Gold Kinesis Silver
알고리즘형	• 담보 없이 수요 기반 공급량 자동 제어로 가격 안정화	• 담보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 탈중앙화 운영	• 안정성은 시장 신뢰와 알고리즘 견고성에 좌우됨	Celo Dollar Fei USD Djed Sperax USD

Source: 삼정KPMG 디지털본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90%가 미국 달러 기반
USDT·USDC가 시장 양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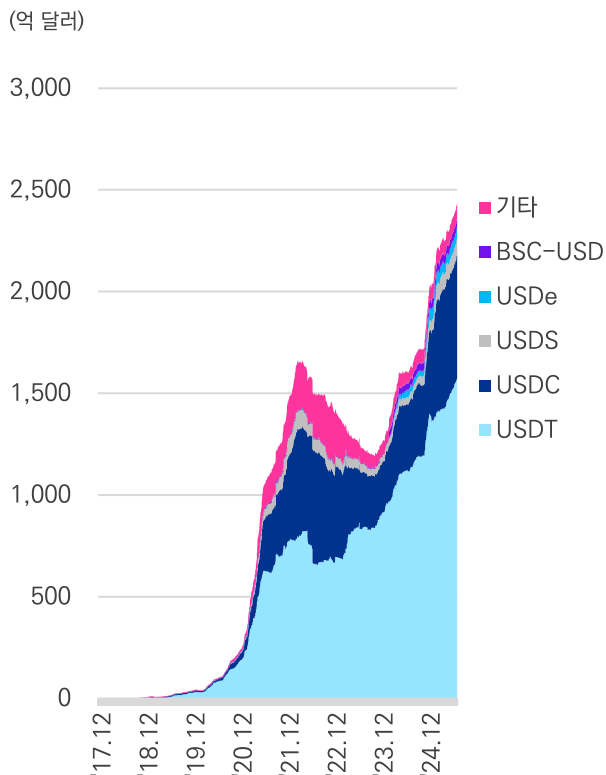
”

급성장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토큰추적 플랫폼 rwa.xyz에 따르면 2025년 7월 17일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444억 달러 수준으로 2017~2024년 연평균 10배씩 급증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시총의 약 90%는 미국 달러 기반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 등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USDT는 시장점유율 1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상대적으로 신흥국·개도국 등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 투명성·준비자산 구성·규제 준수 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기도 했다. USDT는 지급준비금·준비자산 내역 등 준비자산 확인 보고서(Assurance Report)를 불규칙적으로 공시했으나, 최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발행량에 상응하는 지급준비금 보유 및 준비자산의 80%를 미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USDC는 투명성 등 규제를 준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 이용자 비중이 높고, 쇼피파이(Shopify), 스트라이프(Stripe) 등이 최근 USDC 기반 결제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USDC는 현재 지급준비금 자산 100%를 미국 국채 등 고유동자산으로 구성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추이]



[주요 스테이블코인 특징]

구분	USDT(테더)	USDC(서클)
발행사	• 테더(Tether Limited) - 엘살바도르	• 서클(Circle) - 미국
시가총액 (25.7.16 기준)	• 1,574억 달러 (전체 중 64%)	• 622억 달러 (전체 중 25.5%)
준비자산 보고서 공시 및 외부감사	• 투명성 논란 지속, 불규칙적 공시 → 최근 매 분기 공시, 연간 외부감사 미공개	• 준비금, 코인 발행·상환 현황 공시 • 매월 확인 보고서 발간 및 연간 외부감사
규제	• 비교적 느슨 • 규제회피 지역 기반	• 미국 등 규제 준수 • 금융기관 협력 체계

준비자산 구성 (%)



Source: rwa.xyz,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Tether, Circl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미국 하원 통과 디지털자산 3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법적 규제 명확화,
통화안정성 등을 고려해
비금융사의 발행 요건 강화
”

지니어스법(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

지 니 어 스 법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은 달러 기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인 요건·지급준비금·공시 등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방 및 주(州) 관할로 규제당국을 이원화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은행 자회사, 비은행기관 등은 금융기관 성격에 따라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전 미 신용 조합 관리국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 등 연방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총 발행잔액이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주 정부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은행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에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 SCRC)의 합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지니어스법 주요 내용 (1/3)]

구분	주요 내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① 결제 또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② 미리 정해진 금전적 가치(예: 1 USD)로 상환·환매·재매입할 의무가 있으며, ③ 동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디지털자산 - 법정화폐, 예금과 증권은 제외		
이자 지급 금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사용 등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이자 또는 수익 지급 금지		
규제기관	- 규제기관을 연방규제기관(Federal payment stablecoin regulator)과 주 정부 규제기관(State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regulator)으로 이원화 - 각 주 정부는 연방 지니어스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연방 규제 충족 여부를 SCRC로부터 매년 인증 -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 SCRC) 구성 - 재무부 장관(위원장 역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의장으로 구성		
발행인 자격	- 허가된 발행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PPSI)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 PPSI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기관 허가 필요, 총 발행잔액이 100억 달러 미만 시 주 정부 승인 선택 가능		
	PPSI 유형	금융기관 유형	허가 당국
	① 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	부보 예금기관(은행 및 신용조합 등)의 자회사	연방 감독당국인 OCC, FRB, NCUA 등
	② 연방 정부 인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Federal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비부보 예금기관, 외국은행 연방 지점	OCC
		비은행 금융기관	OCC
	③ 주 정부 인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State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총 발행잔액이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주 정부 승인 선택 가능	주정부의 담당부처
	은행 자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관(즉, 일반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의 만장일치 승인 추가 필요		

Source: KPMG “Crypto and Digital Assets: Final GENIUS Act and Other Actions” (July 2025), The Conference Board “Stablecoin Law Represents New Era for Crypto” (July 2025)

“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에
상응하는 지급준비금을
달러·미국 국채로 보유해야

”

지급준비금은 발행액의 100%를 보유·유지해야 하며, 준비자산은 고유동성 안전자산인 달러, 미 단기채 등으로 정하며, 준비자산에 대한 발행인의 고유자산과 분리 보관 의무 및 재담보의 원칙적 금지 등을 규정한다. 동 법은 준비자산의 검증과 투명한 공개를 제도화하여 매월 준비자산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사와 경영진이 이에 대한 인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총 발행잔액 500억 달러 이상 발행인은 연 1회 이상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동 법은 이용자 요청 시 즉시상환 의무를 명시하고 상환정책 수립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발행인 파산 시 지급준비금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간 비례배분 원칙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금융 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고객확인 의무(Know Your Customer: KYC), 테러자금방지 의무 등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지급준비금 등을 보관하는 사업자(Custodian)에게 고객 자산과 고유재산 간 분리 보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니어스법 주요 내용 (2/3)]

구분	주요 내용
지급준비금 및 준비자산 요건	-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항상 1:1 비율로 상환 가능한 지급준비금(reserves) 보유 의무 - 준비자산은 현금, 연방준비은행 예치금,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 또는 미국 국채 담보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 RP) 및 역레포, 정부 MMF 등으로 제한 - 준비자산을 발행인 고유자산과 분리 보관, 준비자산의 재담보(rehypothecation) 금지
상환 의무 및 절차 명시	- 이용자의 상환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 명시 - 상환정책(상환 절차, 소요 시간, 수수료 등 포함) 수립 및 공시 의무 - 비상 상황 발생 시, 상환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의무화
공시, 외부감사	- 발행인은 웹사이트에 매월 총 발행량, 준비자산 금액과 구성 내역(종류, 평균 만기, 보관 위치 등) 등 준비자산 보고서 공시 - 준비자산 보고서에 공인회계법인의 검사 수행 및 대표이사(CEO)·최고재무책임자(CFO)의 인증서(certificate) 제출 의무 - 총 발행잔액 500억 달러 이상 발행인은 매년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받은 재무제표 공시와 감독당국 제출 의무
자본, 유동성 및 위험관리 요건	-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연방 규제기관이 하기 규정 제정 - 자본요건(사업 모델 및 위험 프로필에 맞게 조정, 자본 완충금 포함), 유동성 기준, 준비자산 다각화 요건(은행 기관에 대한 예금 집중도 및 금리 위험 관리 기준 등), 정보 기술 위험 관리 요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업무 범위 제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상환업무, 준비자산의 매입·보유 및 보관 서비스 등 관리 업무, 스테이블코인·필수 지급준비금·스테이블코인 관련 개인 키 관리 등 보관·관리 서비스 업무 및 감독당국이 승인한 업무만 영위
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 등	- 발행인은 은행비밀유지법(Bank Secrecy Act)상 금융기관으로 간주 - KYC, AML, 적절한 주의 의무,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거래내역 보존, 고객신원확인(발행인과 계좌 보유자 신원 확인 및 검증 등 포함) 등의 의무 준수
수탁 요건 및 소비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금 또는 개인 키 보관·관리업자의 ① 연방 또는 주 감독기관의 인허가, ② 고객 자산과 수탁기관 고유재산 간 분리 보관 의무, ③ 고객 자산의 공동 운용 또는 유용 금지 의무화 - 발행인 파산 시, 지급준비금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간 비례배분 원칙 및 최우선적 청구권 부여

Source: KPMG “Crypto and Digital Assets: Final GENIUS Act and Other Actions” (July 2025)

“
외국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
미국 내 유통과 판매
금지 원칙

”

외국 발행인과 관련하여 지니어스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국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외국 발행인 관할 지역이 지니어스법 규제와 동등한 규제(comparably regulated) 체계를 갖춘 국가로 판단하고,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전원의 동의를 받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기본적으로 준비자산 유지 및 미국 정부의 적법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정일 이후 3년 후인 2028년 7월 18일부터 미인가 해외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청약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현재 엘살바도르 소재 테더 등 외국에 소재했으나 미국인에게 실제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미국 사업 전략의 변경과 이에 따른 산업 경쟁도 변화가 전망되며, 미국 진출을 고려했던 국내 사업자 역시 요건 충족을 위해 미국 내 법인 설립 등 현지화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금융기관(일반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SCRC 전원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비금융기관 상장기업은 원칙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차판매(cross-selling) 등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요건을 고려해 SCRC의 전원 동의로 허용되며, 이는 메타와 같은 빅테크·소셜 미디어 기업 진출로 인한 시장 집중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조치이다.

[지니어스법 주요 내용 (3/3)]

구분	주요 내용
기타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 결제수단 또는 법정화폐와 같은 것으로 오인되는 마케팅 금지 • 비금융기관 상장기업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원칙적 금지 － 단, 시스템 안정성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제한 준수 등을 요건으로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의 결정을 받는 경우 예외적 허용 • 은행 등의 자회사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개인 키, 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금에 대한 보관 서비스 제공 가능
외국 발행인 요건	• 미국법상 허용된 자 외 외국인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유통과 판매 금지 • 예외적으로 하기 요건 충족 시, 외국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유통 허용 － ① 미국 재무부가 해당국 규제·감독 체계가 미국과 동등하다고(comparably regulated) 인정된 국가의 규제를 받고,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전원 동의 － ② OCC에 등록 및 감독 － ③ 미국 내 고객의 상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미국 금융기관에 보관 － ④ 미국 정부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압수·동결·소각·이전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적·조직적 역량 보유 － ⑤ 미국의 포괄적 경제제재 대상국 또는 자금세탁 우려 관할권이 아닌 국가에 소재 • 재무장관은 미국과 동등한 규제 체제를 보유한 관할권과 상호 협정 체결 가능, 이를 통해 국제거래 및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운용성 제고
시행 예정일 및 유예기간	• 지니어스법은 ① 법 제정일(2025년 7월 18일)로부터 18개월 또는 ② 주요 연방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연준·FDIC·NCUA·OCC 등)이 하위 시행규정을 공포한 후 120일 중 빠른 날 시행 • 미국 발행인 요건 미충족의 경우, 법 제정일로부터 3년 후(2028년 7월 18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Source: KPMG “Crypto and Digital Assets: Final GENIUS Act and Other Actions” (July 2025), Pragmatic Coders “GENIUS Act Explained: U.S. Stablecoin Law (S.1582) for Issuers & Developers” (July 2025)

“

기존 핵심 금융규제 법안에
디지털자산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관할 명확화

”

클래리티 법안(디지털자산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디지털자산 명확화 법안)은 미국 증권법, 증권거래법, 상품거래법 등 기존의 핵심 금융규제법에 디지털자산 관련 조항을 신설·보완하여 디지털자산 관련 미국 주요 금융 규제 체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하고, ‘증권성’-‘상품성’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우선 동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을 기능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증권형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로, ‘상품형’의 경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규제당국 관할 범위를 명확화 하였다. 디지털 상품 거래업자는 CFTC에 등록하되,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KYC·AML 및 고객 자산과 고유자산 간 분리 보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증권성을 지니는 제한적 디지털자산 중개업자 등은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여 법적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 주요 내용 (1/2)]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자산의 분류 및 감독 체계	- 디지털자산을 기능적 특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명확한 규제 관할 설정 -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은 본질적으로 분산 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발행 및 전송되는 전자적인 자산으로, 가치, 권리, 또는 서비스나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권을 의미 <table><tr><th>구분</th><th>정의</th><th>관할권</th></tr><tr><td>① 디지털 상품 (Digital Commodities)</td><td>블록체인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디지털자산으로, 그 가치가 블록체인 시스템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되거나 합리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td><td>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td></tr><tr><td>② 제한된 디지털자산 (Restricted Digital Asset)</td><td>증권법상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며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디지털자산</td><td>증권거래위원회 (SEC)</td></tr><tr><td>③ 인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Permitted Payment Stablecoins)</td><td>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한 디지털자산으로,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미국 달러나 국채 등 고유동자산으로 1:1 담보</td><td>지니어스법에 따른 관할 기관</td></tr></table>	구분	정의	관할권	① 디지털 상품 (Digital Commodities)	블록체인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디지털자산으로, 그 가치가 블록체인 시스템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되거나 합리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② 제한된 디지털자산 (Restricted Digital Asset)	증권법상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며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디지털자산	증권거래위원회 (SEC)	③ 인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Permitted Payment Stablecoins)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한 디지털자산으로,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미국 달러나 국채 등 고유동자산으로 1:1 담보	지니어스법에 따른 관할 기관
구분	정의	관할권											
① 디지털 상품 (Digital Commodities)	블록체인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디지털자산으로, 그 가치가 블록체인 시스템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되거나 합리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② 제한된 디지털자산 (Restricted Digital Asset)	증권법상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며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디지털자산	증권거래위원회 (SEC)											
③ 인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Permitted Payment Stablecoins)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한 디지털자산으로,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미국 달러나 국채 등 고유동자산으로 1:1 담보	지니어스법에 따른 관할 기관											
디지털 상품의 판매, 거래 및 중개	- 디지털 상품 거래업자(디지털 상품 거래소, 중개업체, 판매업체 등)의 CFTC 등록 의무화 및 다음 요건 준수 - 발행인은 은행비밀유지법(Bank Secrecy Act)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 ① 고객 자산과 고유 자산 간 분리 보관, ② 공정거래 및 반공정 거래 방지 시스템 유지, ③ AML·KYC 및 기록 관리 프로그램 도입, ④ 정확한 실시간 가격 투명성 보장 ⑤ 사이버 보안 및 운영 위험 기준 준수 - 단, SEC에 등록된 거래소, 중개업체, 판매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의 경우 SEC가 사기 방지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한 규제 권한 보유												
제한적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중개업자 SEC 등록	- 제한적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을 중개하는 중개업자는 기존 SEC 감독 대상에 해당 - 중개업자, 딜러,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청산기관 등은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 및 고객 보호, 시장 건전성, 공개 의무 등 규제 준수 의무 - 제한적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이 기존 SEC 프레임워크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증권법 준수 의무												

Source: Digital Watch Observatory "The CLARITY Act defines mature blockchain systems for US regulation" (2025.07.18), Congress Research Service "Crypto Legislation: An Overview of H.R. 3633, the CLARITY Act" (2025.07.07), Paul Hastings, "CLARITY Act Unveiled, SEC Issues Staking Guidance and 401(k) Crypto Ban Reversed" (2025.06.06)

“ 일정 요건을 통해 충족하는 디지털자산, CFTC 규정 적용 받을 수 있는 경로 마련 ”

한편, 동 법안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이 통제하지 않고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에 누구나가 참여·검증할 수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동 법에서는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조건을 충족 시 해당 네트워크와 관련된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여 CFTC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SEC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화 여부, 거버넌스 구조, 투명성 등이 인증 기준으로 프로젝트 또는 네트워크가 이를 증명하여 SEC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초기 및 네트워크 확장 단계 등에 있는 프로젝트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SEC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건부 SEC 등록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발행 시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SEC 규제 부담을 벗어나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디지털 상품(상품성)으로 전환·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클래리티 법안 주요 내용 (2/2)]

구분	주요 내용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의 개념 도입	• 일정한 기술적·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 상에서 운영되는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여 CFTC의 감독 적용 • 반면,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EC로부터 증권법상 규제 적용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Mature Blockchain System) • (정의) 충분히 분권화되고, 특정 개인이나 공동 통제 하에 있는 개인 그룹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블록체인 및 그에 연동된 디지털 상품 • (인증 및 요건) 성숙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인증받기 위한 합리적 정보를 SEC에 제출·증명하여 등록 - 성숙한 블록체인에 관련된 디지털 상품의 가치가 ① 블록체인의 사용 및 기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파생되어야 하며, ② 특정 사용자를 제한하거나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③ 특정 보유자의 소유권을 발행된 단위의 20% 미만으로 제한 등의 요건을 규정 • Digital Watch Observatory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코스모스 등이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에 해당 가능성 높음
토큰 발행 단계에서의 조건부 SEC 등록면제	• 초기 토큰 발행인(프로젝트 팀 또는 개인)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초 발행일부터 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한 SEC 등록 요건 면제 - 발행인이 ① 기술 백서, 네트워크 운영 현황, 프로젝트 계획, 소스 코드, 수수료·토큰 분배, 탈중앙화 및 성숙화 전환 로드맵(예: 4년 내 탈중앙화 달성) 등 사전 공개 및 반기마다 업데이트, ② 개별 투자자 한도(단일 투자자가 한 번에 전체 유통량의 10% 초과 취득 불가)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다만, 발행일로부터 최대 4년 이내 해당 네트워크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SEC 등록 면제가 소급되어 철회되거나 추가 자금조달 면제 요건 박탈 가능

Source: Digital Watch Observatory "The CLARITY Act defines mature blockchain systems for US regulation" (2025.07.18), Congress Research Service "Crypto Legislation: An Overview of H.R. 3633, the CLARITY Act" (2025.07.07), Paul Hastings, "CLARITY Act Unveiled, SEC Issues Staking Guidance and 401(k) Crypto Ban Reversed" (2025.06.06)

“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중앙은행의 CBDC
발행·연구 등 금지

”

反CBDC 법안(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反CBDC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을 개정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및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하거나 이를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 법안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① 국가의 화폐 단위로 표시되고, ②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직접적인 채무로서 ③ 일반 대중이 널리 이용가능한 디지털화폐 또는 화폐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한다. 동 법안은 계좌 기반 CBDC 발행 시 정부와 중앙은행의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기능 중첩 가능성을 고려해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육성을 의도한 입법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反CBDC 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연준의 CBDC 발행 및 연구 등 금지	•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CBDC 직간접 발행·유통 금지 – ① CBDC 직접 발행, 개인 대상 CBDC 상품·서비스 직접 제공, 개인 명의 계좌 개설 등 금지, ② 금융기관이나 중개기관을 통한 개인 대상 CBDC 간접적 유통 금지 • CBDC 연구·시험 등 금지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CBDC의 시험·연구·개발·구현 등의 업무 수행 금지
CBDC를 통한 통화정책 사용 전면 금지 및 발행 권한 제한	• CBDC를 통한 통화정책 시행 금지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는 통화정책 시행을 위해 CBDC를 사용할 수 없음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CBDC 발행 권한 명시적 제약 및 CBDC 도입 시 의회 사전 동의 필요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CBDC 발행 권한이 없으며,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그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용 예외	• ‘달러화로 표시되고, 개방형·무허가형·민간형(open, permissionless, and private) 구조로 현금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fully preserves the privacy protections) 디지털화폐’에 대한 적용 배제 명시

Source: Congress “H.R.1919 –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2025.03.06)

미국 디지털자산 3법의 시사점과 향후 전망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지니어스법 통과를 통한 제도권 수용으로 금융권·리테일·핀테크·빅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관련 산업에 진출하며 기존 디지털자산 시장 외 결제·송금·상거래 및 국제거래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발행인에 대해 지급준비금과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바, 컴플라이언스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결제 인프라와 처리속도 등 기술과 자본력, 네트워크 효과 등을 지닌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클래리티 법안과 反CBDC 법안도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가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사업 확장 및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향후 후속 조치와 세부 시행 방안, 이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경쟁구도와 플레이어 사업 전략, 글로벌 주요국의 대응 양상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 3대 법안의 영향 및 전망]

구분	주요 영향 및 전망
지니어스법	• 혁신적 핀테크·빅테크·상거래업체 등 비금융사 외 미국 내 금융권의 합법적 진출 촉진 •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는 디지털자산 시장 외 국내(국경간) 결제·송금·상거래 등 실물경제로 확장 가능 • 라이선스 기반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소수 대형 사업자 간 경쟁과 산업 재편 가능 – 자본력과 마케팅 역량을 지닌 미국 내 대형은행, 글로벌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시장 재편 가능 – 이자 지급이 제한되므로 결제 처리속도, 결제 수수료와 부가가치, API 및 인프라 품질, 브랜드 신뢰도, 네트워크 효과 등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 –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의 중요성 증가 • 외국 발행인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재편 – 외국 발행인도 미국 기업과 동일 수준의 지급준비금, 감시 체계, AML·KYC 등 준수 의무 강화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미국형과 비미국형으로 양분 가능하며, 미국 사업 중인 외국 사업자 중 일부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대대적 사업재편 소지 – 미국 내 직접적 라이선스 확보나 현지 법인화 등 현지화 전략 증가
클래리티 법안	• SEC 관할은 '증권성', CFTC 관할은 '상품성'으로 명확히 하여 디지털자산 사업 확장 관련 법적 불확실성 완화 •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 채택을 위한 탈중앙 프로젝트 확대 –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유인 강화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분산, 탈중앙 구조 채택 가속화 –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탈중앙경영 도입 가능성 확대 – 성숙도 판단과 관련된 분산화 기준과 객관성에 대한 논쟁과 보완 입법 가능
反CBDC 법안	• 국가와 민간의 디지털자산 역할 분리 • 미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구 CBDC 연구 및 실험 중지 가능

- 금융허브로서 미국 위상과 글로벌 달러 패권 강화
-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을 통해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사업의 확장 가능성 제고
- 스테이블코인, 웹 3 결제,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등 민간 주도의 디지털화폐 혁신
- 미국식 규제 수출 가속화 및 글로벌 표준 확산 가능성
- 유럽·싱가포르·중국 등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조정 가능성 공존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용효율적인 결제수단으로
글로벌 접근성 개선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자국
통화 대체 가능성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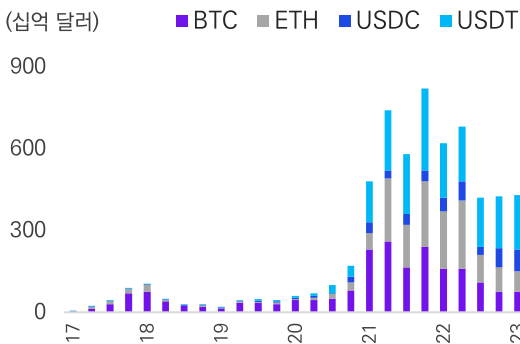
글로벌 달러 패권의 강화 계기…신흥국 중심으로 통화 대체 가능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90%가량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 투자를 위한 지급·결제수단이자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디지털 달러’로 가치저장·결제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84개국 2017년 1분기~2024년 2분기 중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USDC의 국경 간 흐름을 실증분석 한 BIS의 ‘DeFying gravity? An empirical analysis of cross-border Bitcoin, Ether and stablecoin flows’에 따르면 4개 디지털자산의 국경 간 자금이동은 2021년 2조 6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비트코인 등은 위험선호자산으로 긴축 등과 같은 글로벌 자금조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저장수단이나 거래·송금, 해외 결제 등에 활용되는 경향이 높아 비트코인에 비해 훨씬 다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자국 통화가치가 불안정하거나 은행망 등이 취약한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전통적 은행망·SWIFT 송금 시스템 대비 저렴하고 빠른 결제수단으로 자국 통화를 대체하며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는 기존 전통적 결제망의 거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데, 2024년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거래액(15.6조 달러)은 비자(Visa) 거래규모의 119%, 마스터카드(Mastercard) 거래규모의 200%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비용효율적인 결제수단으로 글로벌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면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낮거나 통화가치 변동성이 높은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를 대체할 수 있으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확대를 촉진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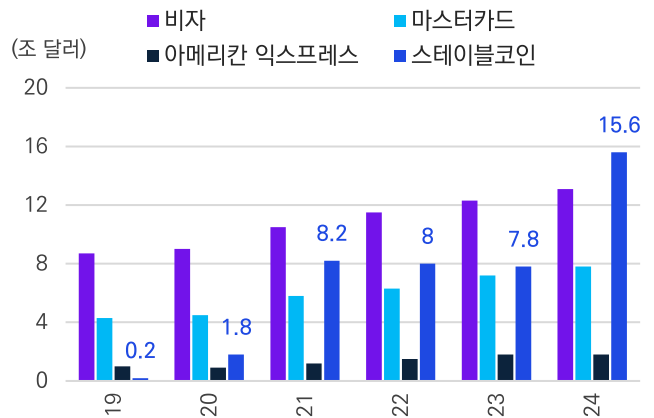
[국경 간 디지털자산 자금 흐름 추이]



Source: Raphael Auer, Ulf Lewrick & Jan Paulick (2025) “DeFying gravity? An empirical analysis of cross-border Bitcoin, Ether and stablecoin flows” BIS Working Papers 1265,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Note: 2017년 1분기~2024년 2분기

[전통 카드사 VS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 비교]



Source: Ark Invest “Big Ideas 2025” (February 2025)

제도화 가운데 미국 금융기관, 빅테크, 핀테크 모두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장

숙원사업 해결로 거침없는 암호화폐 업계와 테크기업

스테이블코인의 입법과 제도화는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업계는 이를 위해 짧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길게는 그 이전부터 수년 이상 로비 활동을 벌여왔으며 2024년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 제도권 밖에서도 이미 스테이블코인 관련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업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암호화폐 업계와 테크기업들은 법안 통과와 규제 명확성을 발판 삼아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Tether Limited

- 설립연도
 - 2014년
- 본사 위치
 - 엘살바도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2025년 1월 이전)
- 대표 스테이블코인
 - USDT
- 2024년 수익
 - 130억 달러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의 발행사 테더는 지니어스법의 외국 발행인 절차를 준수하여 미국 내에서 USDT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테더의 본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던 것을 2025년 1월 이전해 현재 엘살바도르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USDT 담보 자산에 대한 전면적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테더는 지니어스법이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요건과 외환 보유고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면서 미국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고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기 힘들 것이라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테더는 향후 3년 동안은 모든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테더는 미국 시장과 규제에 맞는 별도의 스테이블코인도 준비하고 있다. USDT는 주로 해외송금 등 국경 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새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전용으로 사용해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Circle Internet Group

- 설립연도
 - 2013년
- 본사 위치
 - 미국 보스턴
- 대표 스테이블코인
 - USDC
- 2024년 수익
 - 1억 5천만 달러 이상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전부터 투명한 자금 관리와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며 테더의 USDT와 차별화해 신뢰를 쌓는데 중점을 뒀다. 2025년 6월 미국 증시 입성에 성공했고,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이 법이 “서클의 운영 방식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며, 이는 그동안 쌓아온 규제 준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클은 지니어스법 통과를 계기로 디지털 달러가 합법적으로 기존 금융시스템에 통합되는 과정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클은 2015년 7월 1일 미 통화감독청(OCC)에 전국 신탁은행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탁은행 승인을 받으면 서클은 자체적으로 지급준비금을 보관·관리하고, 기관 고객 대상 암호화폐 자산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주에서 단일 면허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코인베이스는 2025년 ‘Coinbase Payments’라는 이름으로 전자상거래·구독형 SaaS(Software as a Service)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 결제, 정기 구독, 온체인 정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를 통해 결제 구독(Subscription), 환불, 분할결제, 에스크로(escrow) 등 기존 카드결제와 유사한 구독·정기결제 인프라를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제공하여, 무료 수수료·상시결제·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

미국 전통금융기관 사업
본격화, 아마존·월마트 등
유통사까지 관심

”

제도화에 맞춰 사업 본격화 나서는 전통 금융기관과 유통사, 핀테크

미국의 전통 금융기관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라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JP모건은 2018년도 JPM 코인을 개발·사업화 하는 등 제도화 이전부터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7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JP모건 예치금 코인(J.P. Morgan Deposit Token, JPMD)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PMD는 일종의 기관 전용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 지급 기능을 갖춘 허가형 구조의 디지털 예금 토큰이다.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 ‘Base’ 상에서 발행된다. JPMD를 사용하면 기관 고객이 베이스 블록체인에서 더 빠른 거래 속도와 결제 시간 단축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등은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다.

아마존·월마트 등은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과 자체 생태계 락인 효과를 위해, 메타(Meta)는 앱 내에서 창작자와 기업 간 즉시적이고 저비용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자사 생태계에서 통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검토하고 있다.

페이팔은 2023년 이미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PYUSD를 발행했으며 스트라이프(Stripe)는 2024년 10월 스테이블코인 거래 특화 플랫폼 Bridge를 인수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애플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레뎃페이는 홍콩에서 비자 결제망을 통해 자국 통화를 선불금으로 충전 후 실시간으로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여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를 론칭하기도 했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동향과 플레이어 행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동향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전반에 대한 법적 토대가 되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이 발의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상장 등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발행인 자격 및 의무,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 22대 국회 발의(예정)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구분 (발의일)	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안 (2025.6.11)	강준현 의원 발의 예정안 (2025.7월 중 발의 예정)	안도걸 의원 발의 예정안 (미정)
법률명	• 디지털자산기본법	•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 혁신법)	•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특징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법적 성격	• 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안 보완	•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규율하는 특별법적 성격
디지털자산 산업 유형	• 9개 업권 구분 및 진입규제(인가·등록·신고)	• 9개 업권 구분 및 진입규제(인가·등록·신고)	
규율 주체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 기획재정부(외환당국), 한국은행(통화당국), 금융위원회(감독당국)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체계
스테이블코인 적용 범위	• 외국 발행 등에 관한 적용 배제	• 국내 발행 모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해외 발행된 원화 연동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 자본금 요건 등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 규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 요건	• 인가제 •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타당·적절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계획 등 8개 요건	• 인가제 •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분산원장 중요기능에 대한 통제 권한 기준 등 보안 기준, 적절한 상환 정책, 준비자산 구성과 운영 등 12개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의무	• 발행신고서 제출 제도 • 자본금·지급준비금 등 재무건전성 유지, 도산 절연 조치 마련 의무 등	• 백서 등 공시 의무 • 3영업일 이내 현금상환 의무 • 준비자산 구성 및 유지 의무 • 준비자산 매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 및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보고서 공시 등	• 담보자산 요건 • 유동성 높은 자산(원화 예금, 국채 등)으로 구성 •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 등
한국은행 권한	•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및 금감원 검사 요구권	• 평상시, 자료제출 요구 및 금감원 검사 요구권 • 긴급시, 금융위에 의견 표명	• 기재부(외환당국)·한국은행(통화당국)·금융위 (금융당국)가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 구성
투자자 보호	• 적절한 환불준비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환불준비금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 투명한 발행 및 유통 정보 제공,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사용자 보호장치 마련,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장치 명문화 등
기타		• 운영 실패 시, 금융위의 긴급조치 권한 가능 • 금융위 지정 전문기관의 디지털자산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 의무 등	• 통화관리 측면의 관리 방안, 외환거래 관리 방안 마련

Source: 의안정보시스템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 의원 등 37인)’ (2025.06.11), 한국핀테크산업협회·더불어민주당 정부위원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2025.6.17), 디지털데일리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 지급보증 명문화” 등…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입법 추진’ (2025.06.13) / Note: 강준현 의원 및 안도걸 의원 안의 경우, 발의 예정으로 향후 세부내용 변동 가능

“

디지털자산 규율 포괄법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의 및
발행인, 상환, 담보자산 요건
등 규제 마련 중

”

“

한국은행, 2018년도 이후
CBDC 연구 확대에 이어
실증사업 프로젝트 구현

”

현재 발의된 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안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권별 진입규제·행위규제,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공시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이원화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타당·적절한 환불 계획, 도산 절연 구조 등 안정성을 뒷바침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 발의 예정인 법안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완 입법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 혁신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보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2단계 법안으로 디지털자산업의 유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 및 재무건전성 등에 정하고 있다. 특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해 기존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디지털자산업만의 독립된 규율체계를 구축했다. 발행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등으로서 1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는 등 12가지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 시, 3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 등을 부과했다. 한편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담보자산으로 예치하되, 유동성이 높은 자산(원화 예금·국채 등)으로 구성하는 등 담보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통화관리 측면에서 통화량과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관리·운영체계 구축, 기재부(외환당국)·한국은행(통화당국)·금융위(금융당국)가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자본유출입 보장과 환율 안정성, 통화주권 등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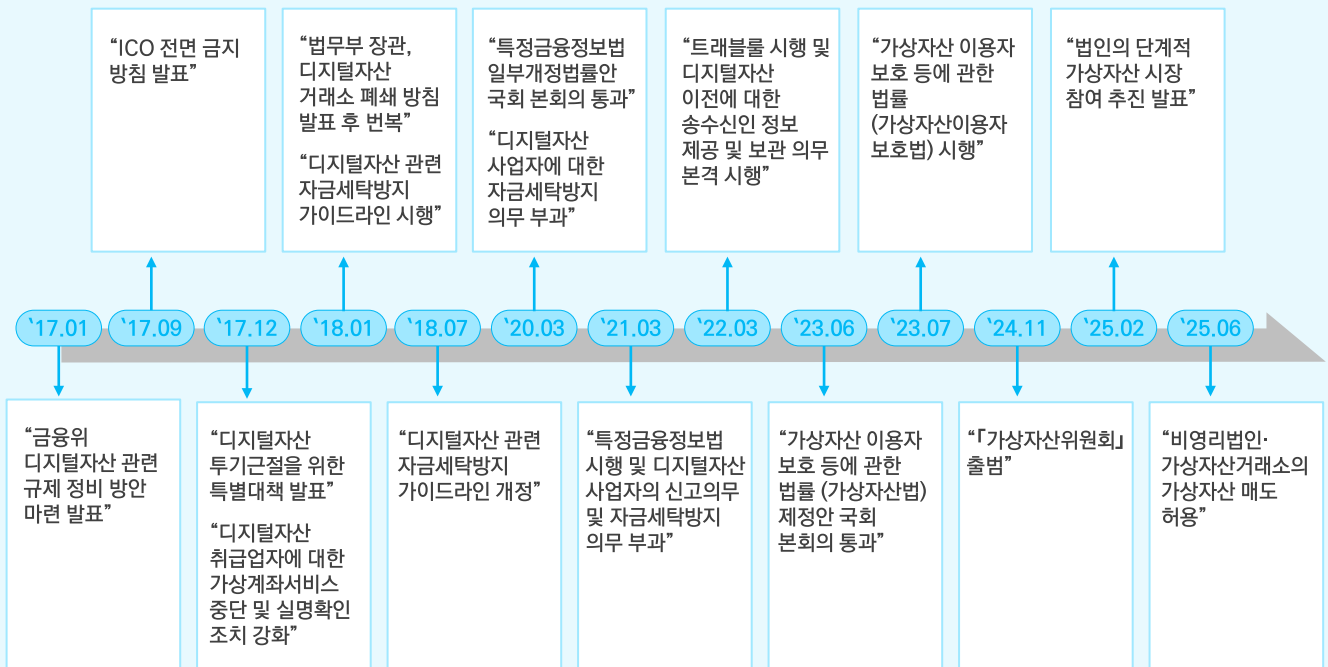
한편 한국은행은 2018년 1월부터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를 출범하여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2020년 4월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했다. 2021년~2022년에는 가상공간에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의 활용성 및 제반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고자 2차례에 걸쳐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2023년 이를 금융기관과 연계하는 실험도 실시했다. 2023년 11월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예금 토큰(디지털 바우처 기능 부여) 발행-실제 물품 구매 등 유통-최종 지급 단계’로 구성되는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발표한 후 2025년 3월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으로 구현하였다. 동 서비스는 2024년 10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7개 시중은행의 예금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최대 10만 명(이용자 예금토큰 보유한도 100만 원, 기간 중 예금토큰 총 전환한도 500만 원 설정)의 일반인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026년 2차 테스트를 앞둔 동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참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관련 규제 논의 동향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회사와 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시장 질서 정립,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한 대응 방안에 중점을 두는 양상이었다. 2020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및 실명확인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2022년 5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루나 사태’ 등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바 있다.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의 필요성과 미국·유럽 등 가상자산 연계 ETF 등 금융상품 출시와 법제화 등을 고려해 정부 역시 ‘산업 혁신과 시장 질서 확립’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가는 양상이다. 2024년 11월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및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고 2025년 2월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특히,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가상자산 현물 ETF(Exchange-Traded Fund) 및 파생상품 제도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규제당국 역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세부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주요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논의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다.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



Source: 금융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가상자산거래소·금융사·
빅테크·핀테크 등
스테이블코인 사업 선점
위한 발 빠른 행보

”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국내 빅테크·금융사·스타트업 간 합종연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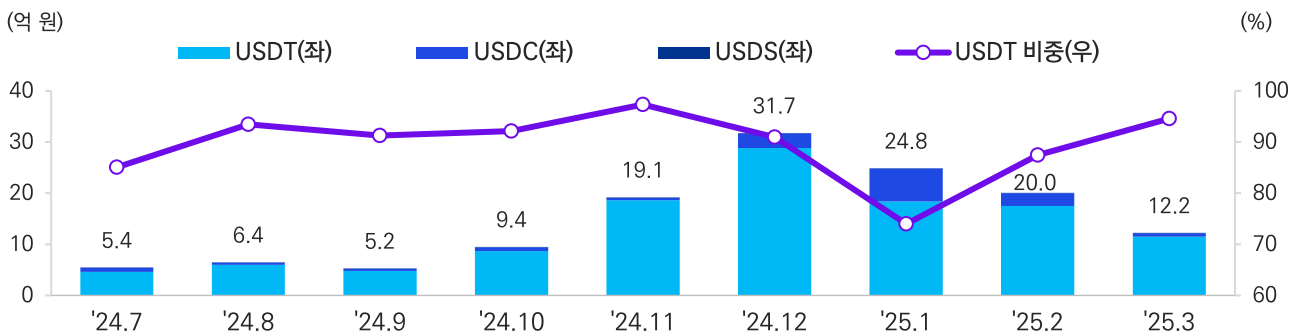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이 최근 급증하였다.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 거래대금은 약 57조 원으로 2024년 3분기 17.6조 원에서 4분기 60.3조 원으로 3배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USDT가 월별 거래대금 대비 74~95%를 차지하는 등 이용 비중이 크고 실물 결제·송금보다는 투자·자산 거래 목적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금융사·빅테크·핀테크 등은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직 관련 법안 미비로 당장 사업화는 어려우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발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이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2025년 6월 열린 Npay 미디어데이 2025 행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3,000만 명이 넘는 네이버페이 사용자와 가맹점 네트워크, 네이버포인트 등의 생태계를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그림이다. 여기에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와 손잡기로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결제까지 아우르는 시너지를 예고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의 유효성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USDC 발행사 서클의 협력 관계에서 증명된 바 있다.

카카오페이 역시 일찌감치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 의지를 내비쳤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플레이어로 꼽힌다. 카카오페이가 간편 결제 플랫폼 중 가장 큰 선불충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잔액 규모는 2025년 2분기 말 기준 약 5,911억 원에 달한다. 카카오페이는 2025년 8월 테더, 카이아 재단, 라인 넥스트와 ‘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 해커톤’을 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 외화 스테이블코인 월별 거래대금]



Source: 한국은행, 차규근 의원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기준

“

스타트업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 진행중
전통 금융권도 준비태세

”

전통 금융권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협의체를 결성, 향후 합작법인을 설립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와는 별개로 각 은행별 움직임도 활발한데, 신한은행은 공공배달 어플 ‘땡겨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을 위한 PoC(개념검증)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KB국민은행은 여러 파트너사들과 PoC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나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적·사업적 검토를 하고 있다. 카드업계 역시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대비해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는 선제적으로 관련 상표를 출원해 둔 상태다. 증권사들 또한 상표권 출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당장 뚜렷한 사업 계획은 없더라도 향후 스테이블코인 사업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스타트업도 관련 사업에 적극적이다. DSRV는 싱가포르의 디지털결제 인프라 기업 StraitsX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기술 개발과 국경 간 리테일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페어스퀘어랩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본의 Progmata와 국경 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팩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은행망 연계 정산 특화 결제사인 헥토파이낸셜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선언하고 이커머스 대금결제나 해외송금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화 결제 핀테크 기업인 트래블월렛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와 원화·프로그래머블 스테이블코인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맺었다. 카카오의 CIC에서 분사한 오픈에셋은 다양한 사업자들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대행할 수 있는 ‘오픈민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커먼즈재단은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이나 국채가 아닌 현물 은을 포함하는 등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국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움직임]

기업·업권	최근 동향과 특징
네이버페이	- 두나무와 손잡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고려 3,000만 명 이상의 네이버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네트워크
카카오페이	5,911억 원에 달하는 선불충전금 보유 (2025년 2분기 기준) - 해커톤 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은행	-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결성, 향후 합작법인 설립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 검토 - 협의체와 별개로 각 은행별 시장 진입 및 대응 방안 내부 검토
카드사	협회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대비 의견 수렴, 카드사별로 상표 출원 움직임
증권사	다른 업권 대비 소극적이나 상표권 출원 행렬에 동참
DSRV	싱가포르 디지털결제 인프라 기업 StraitsX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기술 개발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본의 Progmata와 국경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 검증
헥토파이낸셜	이커머스 대금결제, 해외송금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확대 계획
트래블월렛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와 원화 스테이블코인·프로그래머블 스테이블코인공동 개발을 위한 MOU
오픈에셋	다양한 사업자들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대행할 수 있는 오픈민트 서비스 준비
커먼즈재단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이나 국채가 아닌 현물 은을 포함하는 등 차별화 전략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통화주권·금융안정성·
혁신 간 구조적 딜레마 봉착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통화주권-금융안정성-디지털자산 시장 혁신 간 구조적 딜레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통화 패권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은행권과 핀테크, 게임업계 등에서는 관련 사업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하여 통화주권, 금융안정성 및 디지털자산 시장의 확장과 혁신이라는 목표 간 구조적인 딜레마에 놓여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영향력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 국내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통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환율 정책 효과가 저하되며 자본 유출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법송금·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커지는 등 통화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을 통해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원화’가 디지털자산시장 외 실물 시장에 빠르게 통용될 경우, 법정화폐 ‘원화’의 통화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 발권력에 기초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량 조절과 같은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기존 방식을 벗어난 송금과 결제가 확대될 경우, 외환 통제 및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효과가 제약되며 은행을 통한 외환관리와 외환보유고 관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도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다. 환매권 보장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발행사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의 상황이 의심받아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며, 발행사 또는 유통 시스템의 문제로 과잉매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면 과거 머지포인트나 이커머스 사태와 유사하게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 저하로 연결될 소지도 있다. 그 외에도 해킹 및 네트워크 포크로 인한 호환 문제 등 기술적 리스크 등도 존재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된 우려 사항]

구분	리스크 요인	주요 내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미도입	통화주권 상실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원화(부분) 대체 가능 - 통화정책 효력 약화, 자본 유출입 통제 불가능, 환율 불안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통화 무력화 (중앙은행 통제권 상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법정화폐 원화의 통화지위 약화 - 중앙은행의 통화·금리 정책 제약, 외환관리 난항
	디지털 뱅크런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발행사의 시스템 오류, 유동성 부족, 과도한 매도 등에 대한 대응 부족 시 디지털 뱅크런 야기 가능. 이는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 가능
	기술적 문제	해킹, 네트워크 호환 문제 등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언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방식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로 자본력과 확장성을 가진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 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규모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통화주권 확보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BIS 등은 금융위기와 같은 꼬리 위험(tail risk)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페그 이탈 및 코인런 가능성, 가치 안정성과 단일성(액면가로서의 보편적 수용) 측면에서 화폐로서 핵심 기능 부족, 자금세탁과 유동성 위험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 내에서 근본적으로 부족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높은 환율변동성과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 국가 주도 금융 패권이 민간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동하며 이들이 가진 데이터와 결합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 시장과 결제 인프라 등을 통해 미래 경제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시장의 지급수단을 넘어 디지털금융과 실물경제 내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통화로서 역할을 할 민간 사업자의 혁신성을 적극 활용·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해외 발행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한 규제 방향이다. USDC·USDT 등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국내에서 유통 중이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어떻게 규율하는가에 따라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좌우되고, 이는 국내 통화정책 실효성 및 통화주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EU·싱가포르 등의 정책 기조와 규제 대응,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침투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들 역시 금융 안정성 제고와 플랫폼 확장성·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확충 및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 발행(지급준비금·스테이블코인 수탁 및 운용)·유통(거래, 결제)·환매·소각(상환) 등 스테이블코인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플레이어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합종연횡을 통해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고, 민간 기업이 자본시장 구조와 기술 인프라를 결합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중심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 행보와 더불어 유통사·핀테크 등은 파트너십 등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여 소비자편의 제고 및 생태계 확장 등을 모색하고 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라이프사이클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확충 및
미국·非미국 시장 향한
글로벌 확장 전략 고려

”

국내에서도 결제사·게임사·유통사·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의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각 기업과 산업이 가지는 특성과 강점, 다양한 기술기업·플랫폼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잠재수요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충해야 한다. 일례로 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중국 등 상거래업자, 해외여행 수요, K-콘텐츠 연계 결제 서비스 등 특화 전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API 및 관리 툴 제공 서비스, 지갑 및 개인 키 보관 서비스,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AML·KYC 등의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이상거래·고위험 탐지 솔루션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사업 기회이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시장 선점과 확장을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나눠가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창기 시장 지배자였던 USDT와 USDC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확고해지며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USDT를 비롯해 다수의 해외 발행인들이 미국 진출 전략을 재편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시장 퇴출도 예상된다.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를 계기로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정책 기조가 조정될 소지가 많으며 해당 지역의 사업자들 역시 사업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산업의 변곡점에서 안정적 사업을 위한 국내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시장 진입과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다.

셋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라는 점이고, 신뢰 확보를 위한 메커니즘 및 위험관리와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격 요건으로 논의되는 자본금 수준, 지급준비금 유지·관리와 상환성, 준비자산 구성, 사업 영위 능력 등 인허가 요건을 넘어서 준비자산 운용·관리 및 검증 체계, 이용자 보호 정책,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인프라와 기술적 프레임워크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준비자산 관리 및 유동성 리스크, 지속적으로 변하는 국내외 정책과 이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글로벌 확장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 확충을 위해 미국 또는 비미국 진출 전략을 정교화 해야 한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미국 내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니어스법상 외국 발행인 요건을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실제 미국 시장 내 수요와 산업 내 경쟁도, 유통 가능성과 사업 확장성 등을 파악해 사전적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필요시 미국 내 사업자와 협력 등을 통한 현지화 전략 등도 고려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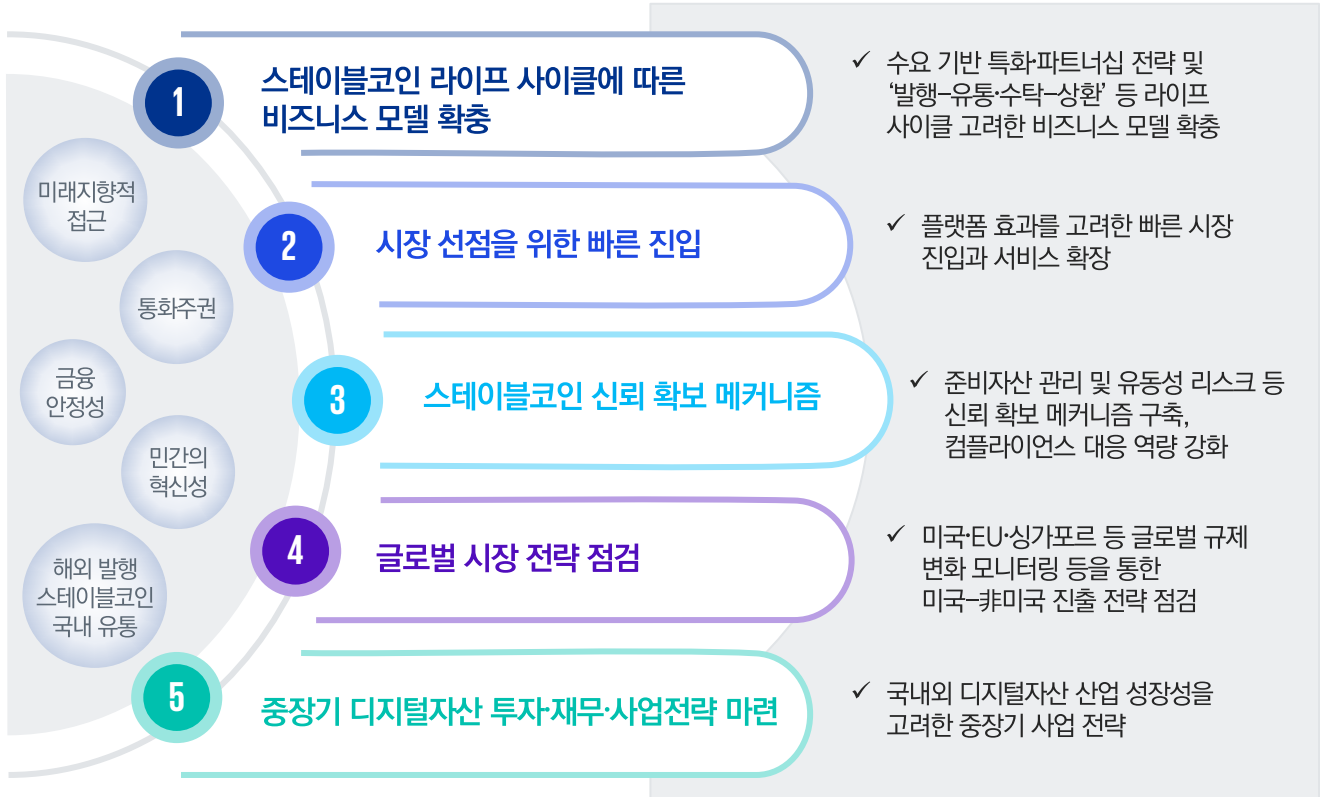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자산 산업
외연 확대 대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전략 필요

”

또한 지니어스법 세부 규정에 따라 각 국가별 정책 대응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규제당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동향과 사업자의 대응 방향을 모니터링하여 동남아 등 비미국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통용 또는 확장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기조와 산업 지형의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디지털자산 사업 확장성을 고려한 선제적 사업 전략도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업권법이 제도화되면서 금융·결제, 디지털자산 보관·수탁, 토큰 증권, 공공·인증·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미국 클래리티 법안 등 통과 시, 상품성을 인정받아 사업을 확장하는데 규제적 혼선이 낮아지는 만큼, 초기 프로젝트 단계부터 탈중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토큰 유통체계·공시 방안 등을 마련하는 다수의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며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이 확장될 수 있다.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 사업 기회를 고려해, 전사 사업전략 및 재무 전략과 일관된 디지털자산 투자 전략 및 재무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고려 사항과 기업 대응 방향]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Business Contacts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문팀

박성배
부대표, 리더
T 02-2112-0304
E sungbaepark@kr.kpmg.com

사업전략자문

이동근
전무
T 02-2112-7587
E tongkeunlee@kr.kpmg.com

문철호
전무
T 02-2112-0869
E cmoon@kr.kpmg.com

황태영
상무
T 02-2112-0690
E taeyounghwang@kr.kpmg.com

프로세스·내부통제·회계·공시 자문

안창범 (테크 섹터)
전무
T 02-2112-0312
E cahn@kr.kpmg.com

이채능 (테크 섹터)
전무
T 02-2112-7884
E chaeneunglee@kr.kpmg.com

강승미 (테크 섹터)
상무
T 02-2112-0061
E seungmikang@kr.kpmg.com

최연택 (테크 섹터)
상무
T 02-2112-2740
E yeontaekchoi@kr.kpmg.com

석명기 (금융 섹터)
부대표
T 02-2112-0415
E mseok@kr.kpmg.com

신문철 (거래소 섹터)
전무
T 02-2112-0356
E moonchulshin@kr.kpmg.com

박창남 (IT & SOC)
상무
T 02-2112-0655
E changnampark@kr.kpmg.com

심정훈 (IT & SOC)
상무
T 02-2112-0338
E jshim@kr.kpmg.com

세무 자문

장지훈
전무
T 02-2112-0961
E jhunjang@kr.kpmg.com

김병국
상무
T 02-2112-6810
E byungkukkim@kr.kpmg.com

딜 자문

손호승
부대표
T 02-2112-0717
E hson@kr.kpmg.com

유진우
상무
T 02-2112-6629
E jyoo1@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